

特殊圖書館과 情報管理의 問題

—圖書館法 改正 試案과 關聯하여—

鄭 賢 湜

(韓國外換銀行 圖書室)

編輯者註 : 이 글은 1969. 8. 27. 國防大學院 圖書館에서 열린 第3回 全國特殊圖書館大會에서 發表된 論文입니다.

I. 머릿 말

이번 圖書館大會의 發表 主題인 “바람직한 圖書館法의 改正 試案”은 圖書館法이 立法된 後 6년이란 期間이 지난 오늘, 그간에 學論되어 온 法의 問題點을 檢討하고 그 改正 方向을 摸索한다는 點에서 그 意義가 큰 것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의 圖書館法에 規定된 重要한 事項은 ① 公共圖書館의 設立, 監督 및 그 施設 基準 ② 國立中央圖書館의 業務規程 ③ 私立의 公共圖書館에 對한 規程 ④ 學校圖書館에 對한 規程 ⑤ 司書職에 對한 規程으로 大別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圖書館法에 나타난 圖書館의 種類는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 公立圖書館, 私立圖書館으로 區分되고 그 設立 目的에 따라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分되고 있는데 大學圖書館은 大學設置基準令의 支配를 받고 있으며 特殊圖書館은 所屬機關의 法이나 規程에 의해 優先的으로 支配를 받고 있으므로 現行 圖書館法의 規程에는 이 두 館種에 對한 規程이 除外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의 發表 主題의 內容 중 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은 活潑한 論議의 對象이 될 所地가 있으나 特殊圖書館과 大學圖書館에 대해서는 圖書館法上에 새로운 規程을 新設하는 方向에서의 바람직한 圖書館法 改正이란 現實의인 面에서 상당히 어려운 實情이다. 따라서 筆者에게 주어진 特殊圖書館을 中心으로 한 圖書館法의 改正 試案이란 主題는 위에서 본 前提에서 불매 論議의 餘地가 極히 制限되어 있다는 點이 考慮되어야 될 것이다.

II. 特殊圖書館의 一般的 考察

1. 性 格

特殊圖書館에 對한 新規 規程의 插入이나 새로운 立法의 可能性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特殊圖書館의

性格을 살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一般的으로 圖書館을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 公立圖書館, 私立圖書館으로 區分하고 設立 目的에 따라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別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이 區分에 의한 特殊圖書館을 좀 더 細分해 보면 ① 行政, 立法, 司法部 등 政府 各 部署에 附屬된 圖書館(例 : 國會圖書館) ② 地方自治團體의 各 部處 附屬圖書館, ③ 學術研究機關에 附屬된 圖書館(室) ④ 言論, 調查 및 情報機關에 附屬된 圖書館(例 新聞社의 調查部 所屬 圖書室, 商工會議所, 經濟人聯合會 圖書館(室) 등, ⑤ 金融機關 附屬圖書室 ⑥ 企業體 및 其他 法人體 附屬 圖書館(室) ⑦ 軍隊 圖書館(室) ⑧ 特定한 集團, 階層을 對象으로 하는 圖書館(例 兒童圖書館, 盲人圖書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圖書館의 種類는 分類 基準에 따라 經營 形態別, 機能別, 利用方法別, 利用目的別, 閱覽方法別 資料의 主題 專門性 別로도 나눌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주로 圖書館法에서의 館種 區分 基準에서 본 圖書館을 言及코자 한다.

圖書館法 第3條(圖書館의 種類)에는 “① 圖書館은... 그 設立 目的에 따라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하고”이 區分에 의한 特殊圖書館과 그 設立者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同法 4條). 圖書館法 第3條 4項에서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其他 法人 團體가 圖書館 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그 所屬員의 敎養과 調查, 研究 및 테크리에이션 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같은 特殊圖書館의 定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特殊圖書館은 ① 特殊한 專門的 資料를 蒐集 整理하고 ② 特殊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③ 特殊 部門의 利用者를 對象으로 하는 施設이다. 따라서 이들 資料의 特殊 性格과 目的의 特殊性, 그 奉仕 對象의 特殊性(非大衆性)으로 인하여 特殊圖書館을 劃一的인 法的 規制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즉 特殊圖書館의 特殊性을 支配하는 劃一的인 法的 規制는 推想的이고 無意味한 것이 될 것이고 어떠한 制

限的이거나 義務的인 規定도 이 特殊性과의 均衡으로 實現性이 稀薄해진다는 點이 그것이다. 特殊圖書館은 例컨대 國會(國會圖書館), 言論機關(新聞社圖書館), 研究機關(研究機關圖書館), 軍(軍圖書館), 會社(企業體圖書室) 등의 組織과 運營에 干涉하지 않고는 特殊圖書館에 대한 法的인 義務와 權利의 規定이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2. 外國의 特殊圖書館

앞에서 본 바와 같은 理由로 해서 가까운 日本에서도 特殊圖書館에 대한 條項은 이를 圖書館法의 範圍에서 除外하고 있다. 日本圖書館法 第2條는 圖書館法의 適用을 받는 圖書館은 「……一般 公衆의 利用에 供하는 ……地方 公共團體, 日本赤十字社 또는 民法 第34條의 法人(宗教, 慈善, 學術, 藝術, 其他의 公共의 利益에 이바지 하는 公益法人)이 設置한 圖書館……」으로 定義하고 이를 地方 公共團體가 設置한 公立圖書館, 日本赤十字社 및 公益法人이 設置한 私立圖書館으로 區分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그 設立 目的上 公共圖書館의 性格에 屬한 것이다. 大學圖書館은 우리 나라와 같이 大學設置基準令에서 다루고 있으며 學校圖書館은 學校圖書館法을 別途 制定하여 이를 取扱하고 있다. 特殊圖書館에 關한 法으로는 國立國會圖書館法, 日本科學技術情報센터法, 點字圖書館에 대한 身體障害者 福祉法 등이 있다. 最近 日本 衆議院에서 情報産業에 대한 基本法의 制定 必要性이 論議된 바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 時代의 情報産業의 育成을 위한 必要에서 나온 것으로 圖書館界와의 直接的인 關聯에서 이것이 論議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圖書館法과는 次元이 다른 産業振興政策의 一部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最近 銀行, 各種 企業體, 政府, 研究機關 등에서 業務의 機械化, 新製品의 開發, 調查資料의 集中處理 등과 關聯시켜 EDPS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의 導入, 利用을 推進함에 따라 文獻情報의 迅速 正確한 獲得 手段으로 Documentation의 概念이 널리 普及되는 추세이므로 特殊圖書館의 機能의 一部로서, 앞에 말한 情報産業關聯法案에 企業 및 調查機關 特殊圖書館의 機能이 規定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 情報産業法案이 圖書館界에서 直接 提起될 性質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特殊圖書館 分野에 從事하는 司書들이 어느 機會에 情報産業과 關聯된 特殊圖書館의 機能에 대한 集約된 意見을 準備할 必要는 있음을 提言하는 바이다.

우리 나라의 特殊圖書館의 範疇에 드는 圖書館은 美國의 境遇, 政府機關이나 産業機關의 圖書館, 즉 Walter Tompson Co. Chicago, Ill.의 廣告, 마아켓팅 도서관, GMC의 自動車研究圖書館, P.R 圖書館, 法律圖書館,

보잉 항공회사의 航空宇宙圖書館, 科學研究實驗圖書館, 中央醫療圖書館, Dow Chemical Co.의 化學圖書館, 이스트 멘 코닥 會社의 光學, 色採技術圖書館, New York Times社의 新聞圖書館, Time誌社의 編輯局 參考圖書館 등을 代表的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거의 大部分의 美國의 各種機關은 제각기 圖書館을 가지고 있다. American Library Directory(1966-1967)에 나와 있는 이들 特殊圖書館의 數는 4,011개에 달한다.

美國의 圖書館法은 1848年 Massachusetts 州議會가 Boston市의 公共圖書館 設立과 維持를 뒷 받침하기 위해 制定한 것을 最初로 New York, Maine, Rhode, Island 등 여러 州가 公共圖書館을 維持하기 위한 圖書館稅의 徵收 根據을 마련키 위해 制定하기 시작하였다. 그以後 거의 모든 州가 州의 豫算으로 公共圖書館을 뒷 받침하고 있는데 그 중 14個州는 州 憲法에 圖書館에 對한 規定을 두고 있다. Arkansas, Iowa, Massachusetts, Michigan, New York 등은 州憲法에 公共圖書館에 대한 州의 支援을 規定하고 있어 特徵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美國의 圖書館法은 州마다 各기 다르므로 一括的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대체적으로 一致를 보고 있다.

첫째 지역내에 公共圖書館의 設置를 規定하고 있다는 것, 둘째 설치된 圖書館의 運營, 監督機關을 두고 있다는 것, 셋째 設立 運營되는 圖書館에 對한 財政的인 支援을 規定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밖에 公共圖書館에 必要한 專門的인 標準을 設定하고 司書의 資格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 大部分이다. 이밖에 大學圖書館과 學校圖書館도 州에 따라 다르나 各기 法的인 뒷 받침을 받고 있다.

1956年 美國國會는 圖書館奉仕法(Library Service Act)를 制定하였는데 이것은 聯邦政府로 하여금 州政府 및 美領土內에 地域 公共圖書館을 擴張 發展시키도록 支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도서관법도 주로 공공도서관의 설치, 감독, 지원을 위한 것이며, 다른 외국의 特殊圖書館의 位置는 거이 大同小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筆者의 주제인 特殊圖書館에 어떤 制度的인 뒷 받침이 있을 수 없을가 하는 問題는 여전히 未濟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III. 特殊圖書館과 情報管理 活動

特殊圖書館에 關한 法이 現實的으로 여러가지 困難하다는 것은 위에서 大略 살펴 보았다. 그러나 特殊圖書館이 現代의 産業發展에 발 맞추어 그 特殊한 機能을 發揮하기 위해서는 獨自的인 立法 推進으로 보다는

産業振興과 關聯되는 여러 立法 過程에서 特殊圖書館의 位置와 機能을 反映시키도록 하는 것이 結果的으로 特殊圖書館의 發展에 이바지 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面에서의 바람직한 特殊圖書館의 奉仕分野인 經營情報管理問題를 說明함으로써 政府 및 國會에서 앞으로 豫想되는 産業立法 過程에서 反映되어야 할 特殊圖書館의 立場과 機能을 闡明하는 바이다.

1. 情報管理者로서 特殊圖書館의 意義

一般的으로 圖書館의 機能은 圖書를 收集, 整理, 保存하고 이를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과 같은 급격한 學問의 發展과 出版物의 比例의인 增加 狀態에서는 이같은 圖書館의 機能은 重大한 試練에 直面하지 않을 수 없는 形便이 되고 있다. 圖書가 唯一한 知識의 容器이던 時代의 圖書館資料는 바로 圖書 그것이 大部分이었으나 知識의 容器가 非圖書資料의 形態로 進化되고 多樣化되는 오늘날의 圖書館, 特히 特殊圖書館은 從來의 圖書整理方式을 適用하기 困難한 만큼 非圖書資料의 數가 增加하여 그 名稱 또한 圖書館(室)이라기 보다는 資料室이라고 막연히 부르는 便이 좋다고 主張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 결과, 오늘 날 特殊圖書館의 機能으로서 도큐멘테이션 方式을 導入한 文獻情報活動이 強調되고 있는 實情이다. 特殊圖書館의 機能은 그 所屬機關의 要請에 부응하여 「記錄된 모든 文獻情報의 管理」 혹은 「經營情報의 管理」라는 面에서 理解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그러면 特殊圖書館의 새로운 機能으로 主唱되는 情報管理란 무엇인가? 우선 情報란 갖가지 情報源으로부터 信憑與否에 關係 없이 一段 받아 드려지는 性質의 知識의 片鱗을 말하는데 이것을 Information 이라고 하고 이것이 評價되고 整理된 知識으로 다듬어진 것을 Intelligence 라 한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情報란 주로 記錄된 情報源으로부터 나온 情報(Information) 혹은 記錄으로서의 情報源 自體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一般的으로 앞에서 말한 Information 과 Intelligence 를 區別 없이, 그리고 情報源을 記錄物과는 별 相關 없는 것으로 이해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點에서 앞서 말한 情報의 概念을 이것과 區分하여 주기 바란다.

日本情報管理研究會의 定義를 빌리면 「情報管理란 各種 情報를 最大限 能率의으로 그리고 適切하게 收集, 分類, 整理, 分析, 傳達, 利用토록 하는 一連의 管理方式」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結局 終來의 圖書館機能을 더욱 分化하여 ① 圖書館 資料의 收集 對象을 非圖書 部門에까지 크게 擴大하고 ② 整理 過程에서 도큐멘테이션의 手法을 採擇하는 한편 ③ 奉仕面에서 이를 所

屬機關의 經營活動과 直接 連結시키는 것이라고 부인할 수 있다. 筆者는 우리 나라 企業의 最高經營層, 產業界 一般, 政府關係部處, 그리고 立法府의 關係者들에게 이같은 情報管理의 機能을 擔當하는 것이 바로 特殊圖書館임을 認識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이들이 情報管理의 重要性을 認識한다면 바로 特殊圖書館의 重要性을 認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機能 發揮을 위한 制度的, 人的, 財政的 뒷 받침을 組織 속에서 反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들 關係機關의 組織을 規定하는 法, 定款속에 이같은 情報 관리자로서의 특수도서관의 기능이 올바르게 反映되도록 圖書館界의 積極적인 PR 活動을 권유하는 바이다. 筆者는 이것을 본 대회의 主題에 대한 代身으로 提案하는 바이다.

2. 特殊圖書館의 背景과 그 活動 分野

特殊圖書館의 機能으로서의 情報管理가 急速히 要請되고 있는 企業의 一般的 背景으로서 우리는 科學技術의 加速度的인 發展과 世界情勢의 急激한 變化로 世界가 나날이 縮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背景하에서 企業들은 技術 革新의 進行, 企業間의 경쟁 격화, 同種企業에 關한 情報文獻의 量的인 急增에 대처하여 研究 開發의 合理化, 情報活動의 迅速 正確化, 企業經營上의 綜合的인 判斷의 必要性 등으로 인하여 關聯 分野의 各種 狀況의 分析에 必要한 情報의 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해 効率的인 管理를 專擔한 도큐멘탈리스트(Documentalist)로서의 情報管理專門家를 要請하고 있다. 經營管理의 一部分으로서의 情報管理 活動의 內容인 情報의 收集, 分類, 分析, 評價, 判斷, 傳達, PR, 廣告 活用 등은 純粹한 圖書館學과 도큐멘테이션 技術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機械化와 그 시스템의 適用을 必要로 하고 있다. 情報管理의 分野는 販賣管理, 生産管理(製品開發, 生産活動)等 企業經營의 모든 分野에 適用되는 것이므로 情報管理 擔當者의 資格要件은 單純한 特殊圖書館의 司書의 資質 외에 機械化의 技術에서 經營全般에 걸치는 知識이 要求되는 것이다. 日本의 境遇 慶應義塾大學을 비롯한 各 大學의 圖書館學科와 도큐멘테이션협회에서 도큐멘테이션 강좌를 다루고 있으며 大企業의 調查部, 企劃部, 開發部 등에서 調查情報管理의 研修를 하고 있다.

그 밖에 産業能率短期大學, 日本能率協會, 其他 電子計算機專門學校 등에서 情報管理의 機械化 過程을 講座하고 있으며 各 大學 經濟學部, 經營學部 등에서 事務管理, 人間工學(Time & Motion Study) 등의 過程을 통해 이 문제를 部分的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課程이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特殊圖書館 奉仕와 關聯되어, 導入되어 特殊圖書館의 機能 分化에 이바지하게 되

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外國의 大企業은 企業 組織속
에 Line 및 Staff 조직으로서 情報管理 擔當 重役, 情
報管理 擔當部長, 情報管理 擔當次長, 情報管理 擔當
課長, 情報管理 擔當係長의 系層이 形成되고 있는 實情
이므로 特殊圖書館의 組織內의 位置도 이 系層으로 理
解되도록 P.R.되어야 할 것이다.

IV. 結 論

이상에서 살펴 본바에 의하면 特殊圖書館에 關한 圖
書館法의 改正이란 主題는 實은 그 內容이 별로 없는
것이므로 主題의 結論은 改正 試案이 될 만한 것이 없
다는 것으로 歸結 되었다. 그 代身 特殊圖書館에 關한
內容을 各己 소속된 기관의 法에서 最大限 伸張 시키

도록 圖書館界에서 적극 P.R. 하어야 겠다는 것이다.
特殊圖書館의 機能은 機關에 따라 各己 다르므로 한마
디로 말할 수 없으나 各 特殊圖書館은 情報管理者로서
의 機能을 發展시킴으로서 組織內에서의 位置와 機能
強化에 努力하고, 이것을 조직내에 認識 시킴으로 組
織內에 特殊圖書館의 機能과 活動을 規定하는 方向으
로의 法 改正의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계의 P.R.은 勿論이
거니와 組織內에서 司書 自身이 情報管理者로서의 資質
을 길러 그 機能 發揮에 不足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
다. 그렇게 함으로써 特殊圖書館의 情報管理者로서의
機能이 認定될 것이고 制度的인 體制 改善도 可能할 것
이기 때문이다.

螢 火 燈

平素에 讀書하지 않는 사람은 時間的으로나 空間的으로나
自己만의 世界에 갇혀 있다. 그 生活은 정해 놓은 型에
끼어 버린다. 그 사람이 접촉하며 談話하는 것은 극히 소수
의 親友知己 뿐이요, 그 사람이 보는 것, 듣는 것은 거의
신변의 自覺구미한 일에 한해져 있다. 그 갇힘에서 도피하
는 길은 없다. 그런데 한번 책을 손에 잡게 되면 사람은 곧
別세계에 出入한다. 萬一 그것이 良書라면 讀者는 갑자기
世界 第一流의 이야기꾼의 한 사람에게 變身하게 된다. 그
는 讀者를 떠어, 먼 별세계, 먼 옛날로 데리고 가서 心中의
오뇌를 가별게 하고 讀者가 일찌기 모르던 人生의 온갖 모

양을 말하여 준다. (林語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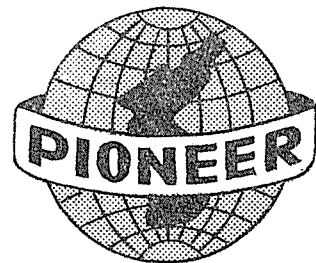
讀書를 사랑하면 항상 思索과 反省의 世界에 出入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물리적 事象을 적은 書籍이라도 그러한
사람을 친히 보기도 하고 體驗하기도 하는 것과 書冊을 읽
어서 아는 것과는 워지가 틀린다. 書籍上으로는 물리적으로
된 일은 한가지 구경거리여서 독자는 구경꾼이 되는 까닭
이다. 그러므로 최량의 書籍은 우리들이 명상적인 기본으
로 유도하는 것이어서 사실 보고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林語堂)

1970

海外學術雜誌 子約案内

- ◎ 海外 學術雜誌豫約購讀에 關한 모든일은 보다 빠
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알려 주
십시오.
- ◎ 海外學術雜誌 豫約購讀에 關한限 世界의 어느 出
版社의 刊行物이나 貴下가 願하는 대로 손쉽게 處
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部와 單行本部를 設置하고 有能
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
應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
하여서도 빠른 情報를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貴下께서 아직도 폐사와 關聯을 맺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를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的 事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 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폰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 3 街 130 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 3553 号
電話 (74) 4 8 5 5 · (75) 4 1 5 5